

보도 일시	2022. 1. 25.(수) 14:00 2022. 1. 2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 25.(수)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	책임자	팀 장 조충현 (044-202-7692)
		담당자	사무관 이용우 (044-202-7694)
담당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	책임자	과 장 이지영 (044-202-7994)
		담당자	사무관 박세은 (044-202-798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23. 1. 26.(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대상
-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 ✓ '20.3월 울산 지역 A사업장의 한 노조 간부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개로 변경하여 관리, 도박·유흥비 등 개인용으로 조합비 7,500만원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 '21.8월 서울 지역 B노조의 조합원은 노조 분회장이 '20년부터 조합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 열람을 간부 측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관할 노동청은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 ✓ '22.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C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D노조는 자조합원 채용을 요구, 이에 시공업체는 D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키로 했으나, C노조는 사전협의를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C·D노조 간 쌍방폭행 발생, 이후 C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하여 타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
- ✓ '19.3월 경북 지역 E사업장 사업주는 출퇴근 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출입문에 도열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 욕설과 폭언,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 실시
- ✓ '21.7월 경기 지역 F사업장은 교섭대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조는 배제한 채,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 관할 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 차별로 시정명령
- ✓ 서울 지역 G사업장은 '19.11월부터 '22.9월까지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5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목)부터 신고를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2일(목)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

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전국 6개 지방청 근로감독관들로부터 현장의 불법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 라고 밝혔다.



□ 목 적

-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개설
-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내용 입력

*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운영 기간) '23. 1. 26.(목)부터 상시 운영
- (신고 내용)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조 활동 방해행위,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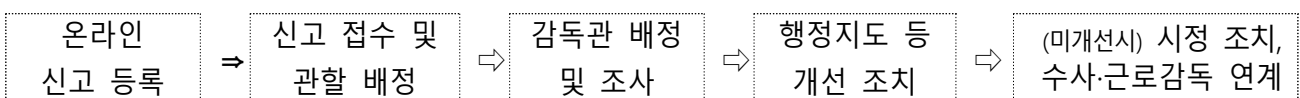
-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 내용, 신고인 정보* 등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공개, 익명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 】

- ❖ (노조 운영·회계투명성) ▲서류비치 의무 및 조합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
- ❖ (노사 불법·부당행위) ▲노조 가입·탈퇴 등 방해, ▲노동조합 활동 과정상 폭행·협박 등 행위, ▲기타 노동관계법상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 ※ 현장 불법행위 중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용자의 부당행위는 기존의 관련 신고센터에 곧바로 간편하게 연결 조치
- ❖ (포괄임금) ▲포괄임금·고정 OT 계약 관련 오남용에 관한 사항

- (처리 절차) ① 신고 → ② 접수 및 관할 배정 → ③ 감독관 배정·조사 → ④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 ⑤ (미개선시) 시정조치, 수사·근로감독 실시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화면 예시



○ 신고 내용 및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입력 화면

■ 신고 내용 입력 (✓ 표시는 필수입력 사항)

- 노동조합/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연락처), 부조리 행위 유형 및 세부내용

■ 신고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성명(실명 또는 익명), 연락처, 이메일 및 처리결과 확인용 비밀번호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익명 신고 가능

신고내용

■ 신고내용은 해당 노동조합등의 불법·부당행위의 사실조사 및 조항항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불확실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와 유가정보의 공개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작성할 때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척(친생부모, 연이대 형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재직

노동조합(또는 회사)명칭

노동조합·회사(사업장) 주소

연락처

부조리 내용

부조리 행위 세부내용

첨부파일

신고인정보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신고인 이메일

피해당사자 여부

피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 비밀번호

☑ 질문

☑ 답변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 및 특수문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신고인 성명, 비밀번호, 질문, 답변내용이 필요하나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청

붙임 2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 개요

□ **일 시:** '23. 1. 25.(수) 14:00 ~ 15:30 (90')

□ **장 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

○ 장관, 노사협력정책관 등

○ 6개 지방청 노사 상생·협력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등 13명

□ **세부일정** * 장관 인사말씀,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 발표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인사 말씀	장 관
14:05~14:08 (3')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 발표	노사협력정책관
14:08~15:28 (80')	의견 청취 등 논의	참석자
15:28~15:30 (2')	마무리	장 관

□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전국 노동현장 일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노사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우리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지난 1월 9일 이러한 추진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렸고,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 주요 간부들이 모여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노동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떠한 제도개선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은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

- 그간 우리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일부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와 불공정 채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시, 노동현장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면서도 노조의 빈번한 관공서 점거 등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어느 근로감독관의 토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 노동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노조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채용 강요,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 모두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며, 의심 사례는 신속히 지도·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들께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현장의 해묵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창구가 되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노동조합 재정상황 자율점검과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에 대한 기획감독도 철저히 실시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년·여성,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노동권익 보호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현장의 불법·부당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아울러,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어떤 조직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 최근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 테두리 내에서 건강한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부의 일탈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노동현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근로감독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해, 우리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 감사합니다.